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727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7422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7271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호선

변론 종결 2023. 7. 18.

판결 선고 2023. 8. 29.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6,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9. 11. D으로부터 "A(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빌려준 A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매달 10,000,000(일천만원)씩 갚기로 하고 1년
안에 책임지고 다 갚을 것을 약속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큰딸 B(피고)를 세웁니다. 안성현장 총
45,180,000원, 인천 E현장 65,000,000원, 미수금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고,
2017. 9. 15. D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만
한다)를 재차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각서에 피고 B와 피고 C이 각각 D을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이 사건 각서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서 무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D이 구속되지 않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상의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7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채무면제 항변

다음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F와 원고가 일자불상경 "상기 본인은 연대보증을 받는 B에게 금전적인 부분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각서에 "연대보증서와 보증용 인감을 50,000,000원 값을 시 B 것 소각, 100,000,000원을 값을 시 C 것을 소각. 100,000,000원에 모든 것을 소각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F 자필로 부기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고 B가 제출한 위 서약서는 이 사건 각서에 위와 같이 부기하면서 동시에 교부한 것이므로, 위 서약서도 이 사건 각서의 부기 내용과 같이 피고들이나 D이 50,000,000원을 갚으면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와 위 서약서가 동시에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변제 항변

다음으로 피고 C은, ① 원고에게 D이 2017. 8. 12. 69,995,6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② 이후 원고가 D이 사용하던 계좌인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및 D의 다른 계좌(우리은행(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번호 3 생략))를 본인 계좌처럼 사용하면서 2017. 9. 3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각 계좌에 들어 있던 합계 50,396,000원 상당의 돈을 원고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③ 피고 C도 2018. 7. 3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8,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각 돈은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①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G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7. 8. 12. H의 계좌로 69,995,6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2017. 9. 15. 작성된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체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③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G주식회사' 계좌 및 D의 각 우리은행 계좌, 그리고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8. 5. 3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31,43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은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위 'G주식회사' 계좌 및 D의 각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원고가 자인하는 위 돈 외에) 합계 27,466,000원이 추가로 이체된 사실 이 인정되고, 위 돈 역시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있고, 이 사건 각서금은 66,104,000원(= 125,000,000원 - 31,430,000원 - 27,466,000원, 이자 약정 없음)이 남아 있다.

<표>

1	2017. 11. 1.(G)	6,720,000	1) 수수료 500원은 절삭한다. 피고들 측에서도 같은 전제에서 계산하고 있다.
2	2017. 11. 30.(G)	1,640,000	
3	2017. 12. 12.(G)	2,205,000	
4	2017. 12. 29.(G)	1,170,000	
5	2018. 6. 29.(G)	11,731,000	
6	2017. 9. 30.(D)	4,000,000	
	27,466,0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및 피고 C이 이체한 돈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공사계약상 발생한 피고 C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합의에 의하여) 우선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나 피고 C이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의 상계 항변

마지막으로 피고 C은 원고가 2017년 7월경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T' 관련 노무비를 인부들에게 직접 집행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2017. 9. 29. 원청으로부터 입금된 9월분 노무비용 43,957,230원을 선입금하여 주고, 2017. 10. 31.에도 원청으로부터 입금된 10월분 노무비용 69,705,350원을 선입금하여 주었는데, 실제로 원고가 인부들에게 집행한 노무비는 이에 미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각 선입금금액과 실제 집행된 노무비 사이의 차액 14,636,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서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노무비용을 선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선입금된 비용과 실제 집행된 노무비 사이에 피고 C 주장과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가사 피고 C 주장과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원청인 주식회사 J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원고에게 이체하기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C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J이 지급한 노무비와 실제 집행된 노무비 사이의 차액이 원고가 피고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중 남은 금액인 66,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1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기홍

1) 수수료 500원은 절삭한다. 피고들 측에서도 같은 전제에서 계산하고 있다.